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 법에 명시〉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42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 법에 명시 (안 제34조)	2
※ 참고자료	
1. 유사 입법례 현황 비교(하위규정에 시험 미실시 근거를 둔 경우)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2.

다. 회 부 일 : 2026. 4.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시험 실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험실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위임한 것이지 시험실시 여부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험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위임입법 일탈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 법에 명시 (안 제34조)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①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제34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u>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4조¹⁾는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에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①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평가위원, 선발 기준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격하도록 하고,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평가위원·선발 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²⁾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관리사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평가위원, 선발 기준 및 방법 등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시행령에서 수급 상황 등을 이유로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상 명시적인 위임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사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운영,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③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환급, 자격증 발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없이 시험 실시 여부를 정한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구 「행정사법 시행령」 위헌 결정에서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³⁾.

○ 이에 개정안은 안전관리사시험의 정기적 실시(매년 1회 이상)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고

3)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2010. 4. 29. 2007헌마910) [위헌결정의 주요내용]
행정사법 제4조가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행정사 자격의 문호를 공평하게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법이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률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특정 직업 또는 직종의 독점을 배제하고 자유경쟁을 통한 개성신장의 수단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현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사법 제4조에서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행정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사 자격시험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사법 제5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른바 “행정사의 자격시험의 과목·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시험과목·합격기준·시험실시방법·시험실시시기·실시횟수 등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시험의 실시여부까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 여부를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즉, 시험전부면제대상자의 수 및 행정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수 등 관할구역내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시험실시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시·도지사가 행정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행정사법 제4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행정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박탈하고 행정사업을 일정 경력 공무원 또는 외국어 전공 경력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모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하위법규에서 기본권 제한사유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시험 실시 여부가 응시자의 자격 취득 기회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첫째, 개정안은 예외 없이 매년 1회 이상의 시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와 현행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음.

- 자격시험은 응시 수요와 자격인력의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외 없이 매년 실시를 법률상 의무로 규정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기적 실시 원칙과 함께 해당 자격의 수급 상황 등 일정한 경우를 고려하여 시

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유사 입법례>

법령명	근거 조문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u>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u>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 둘째, 실제 안전관리사시험 운영에서도 현재까지 응시 기회가 제한된 사례가 나타내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

- 안전관리사시험은 제도가 시행된 2022년 제1회 시험 이후 매년 실시되어왔고, 현재까지 시행령의 예외규정에 따라 시험이 생략된 사례도 없음.

- 따라서 개정안은 시행령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에 대한 논란을 없앤다는 의미는 있겠으나, 응시 기회의 실질적 확대라는 측면에서 입법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접수 및 합격인원 현황(2026.9. 기준)>

시행연도	구분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2022년	1차 필기	3,713명	2,744명	1,226명(44.7%)
	2차 필기	1,132명	1,007명	140명(13.9%)
2023년	1차 필기	1,500명	1,062명	172명(16.2%)
	2차 필기	807명	652명	128명(19.6%)
2024년	1차 필기	1,183명	820명	369명(45%)
	2차 필기	443명	356명	171명(48.0%)
2025년	1차 필기	1,410명	925명	336명(36.3%)
	2차 필기	475명	408명	252명(61.8%)
2026년	1차 필기	967명	671명	345명(51.4%)
	2차 필기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셋째, 다른 국가전문자격에서도 시험 실시 주기와 예외사유를 하위법령에 규정한 입법례(p9 참고자료 참조)가 다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사시험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제도운영의 효율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인중개사 등 다수의 국가전문자격도 매년 시험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자격 취득 기회의 안정적 보장과 시험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된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주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의 실시 주기(실시 횟수)는 인력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상 세부사항으로 하위 법령에 두는 것이 적절하고, 유사한 다른 국가전문자격과의 형평성 및 법률 상향의 실익이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9

참고

유사 입법례 현황 비교(하위규정에 시험 미 실시 근거를 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8.)

법령명	시험의 실시 기준 조항 유형		근거 조문
	시험명	시험 규칙	
공인 중개 사법	○		제7조(시험의 시행·공고) ① 시험은 <u>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u> <u>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u> <u>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u> <u>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u>
국민 영양 관리법		○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u> 다만, 영 <u>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u> <u>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u> <u>지 않을 수 있다.</u>
녹색 건축 물 조성 지원법		○	제1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 험”이라 한다)은 <u>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u> 다만,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 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림 보호법	○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u>매년 1회 이상</u> <u>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환경 시험 검사법		○	제18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 정분석사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u>매년 1회</u> <u>이상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이하 “검정”</u> <u>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u> 다만, 검정 신청자가 아주 적거 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시험의 실시 기준 조항 유형		근거 조문
	시험명	시행 규칙	
공공 기록 물법		○	제42조의2(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실시) ④ <u>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u>
공동 주택 관리법	○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u>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농수 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3(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④ <u>청과부류·수산물류의 시험은 매년 실시하고, 그 밖의 부류의 시험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u>
소방 기본법	○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u>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u>
소방 시설법	○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u>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u>
청소년 기본법		○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u>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u>
해상 교통 안전법	○		제25조(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u>1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관리사 수요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u>